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7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8월 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24년 5월 2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 6276. 7000 www.hdfund.co.kr),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 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유리한 가

격 및 더 많은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매도금지에 해당하는 공모주 비중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도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금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현대인베스트먼트 단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 투자신탁으로 전환(모자형전환 등)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 7. 10)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펀드코드 : EA938)

투자 위험 등급

4 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90% 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율 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며, 주식투자 특히 공모주 투자에 따라 **주가하락위험, 공모주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 국내주식(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채권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및 공모주 등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8% 이내	0.885%	0.4%	0.74%	0.885%	170	264	361	568	1,1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185%	0.7%	1.14%	1.185%	121	248	378	655	1,444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4% 이내	0.685%	0.2%	0.58%	0.685%	110	183	259	421	8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835%	0.35%	0.71%	0.835%	86	175	268	465	1,03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4년 1월 31일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년)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채권	홍혜진	1994	책임(과장)	19	5,152	8.22	6.61	8.22	6.89	4.8
주식	정예진	1995	책임(대리)	2	86	-	-	8.22	6.89	4.1
	김원기	1982	부책임(팀장)	3	875	-	-	8.22	6.89	15.2

(주1) 이 투자신탁의 채권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주식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기준일 : 2026년 7월 10일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주가하락	이 투자신탁은 주식 편입상품으로 주가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

	위험	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식가격은 외부환경의 변동 등 시장전체위험의 증가 및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위험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공모청약은 물론 신규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할 예정으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공모주)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투자 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매도금지 규정에 따른 환금성 제약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 등의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 개별종목에 일반 공모펀드에서 적용하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게 기관경쟁률이 저조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물량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 높은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참여제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하는 증권에는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17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17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4 영업일(D+3)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 영업일(D+4)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hd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대표번호: 02-6276-7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dfund.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총액	10조좌(1좌당 1원)
효력발생일	2026 년 8 월 4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4. 집합투자업자(12 페이지) 및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8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 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W)	판매회사에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펀드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변액(V)	보험업법 제 108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hd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hdfund.co.kr)

QR 코드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EA938)							
(종류)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C-V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변액)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A939	EA940	EA941	EA942	EA943	EA944	EA945	EA946
(종류)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S-P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A947	EA948	EA949	EA950	EA951	EA952	EA953	EA95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2024년 5월 2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dfund.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현대인베스트먼트 공모주 알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EA938)							
(종류)클래스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C-V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변액)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A939	EA940	EA941	EA942	EA943	EA944	EA945	EA946
(종류)클래스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S-P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A947	EA948	EA949	EA950	EA951	EA952	EA953	EA95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내용
2024년 05월 02일	최초 효력발생
2024년 11월 21일	운용인력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종류 S 등 정의 변경),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 내용 삭제에 따른 기재정정 등
2026년 04월 27일	최초 설정
2026년 08월 04일	운용인력 변경, 고유재산 추가투자에 따른 기재정정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1)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6 신영증권빌딩 02) 6276-7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2026. 7. 10 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 년수	주요이력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기구 수(개)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년)		
채권	홍혜진	1994	책임 (과장)	19	5,152	8.22	6.61	8.22	6.89	4.8	2018~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채권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주식	정예진	1995	책임 (대리)	2	86	-	-	8.22	6.89	4.1	2022~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주식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김원기	1982	부책임 (팀장)	3	875	-	-	8.22	6.89	15.2	2024~현재 2014~2024 2011~2014 2007~2011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주식운용본부 신영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 기업분석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주1) 이 투자신탁의 채권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주식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본부 및 팀별로 운용하고 있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 및 당사 동종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운용역			운용기간
채권	주식		
책임운용역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홍혜진	김정중	이승구	최초 효력발생일 ~ 2024.11.20
홍혜진	김정중	정예진	2024.11.21 ~ 2026.08.03
홍혜진	정예진	김원기	2026.08.04 ~ 현재

주1) 2026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2026년 4월 27일 최초 설정되었으며, 최초 효력발생일 이후(최초 설정 전)의 운용역 변경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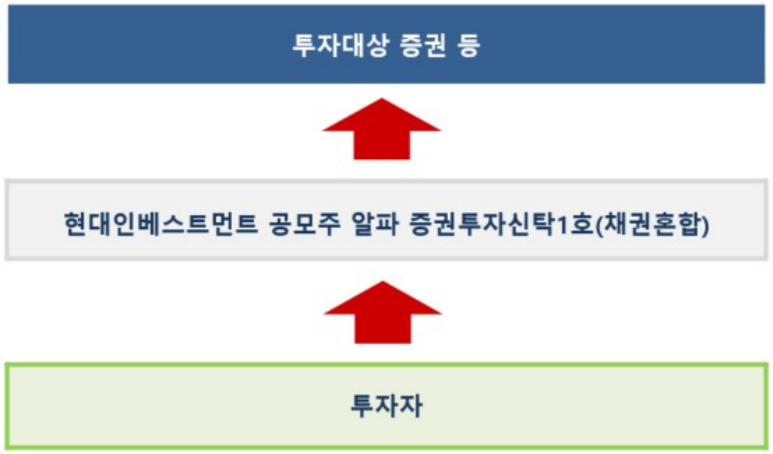

다. 종류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W)	판매회사에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펀드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변액(V)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	채권	9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합산**합니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⑤	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⑥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고유 재산과의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자한도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부터 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부터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①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파생상품매매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른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상기 "가"의 것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상기 "⑤의 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30%, 상기 "⑤의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10%)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⑥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⑤ 부터	

	⑨, 나. 투자제한 ③ 부터 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 국내주식(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채권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및 공모주 등 투자를 통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가) 채권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합니다.

② 철저한 펀더멘탈, 신용위험, 발행조건 분석 등을 통하여 선별된 우량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A- 이상 채권, A1 이상 단기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③ 펀드듀레이션을 1 년 내외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최소화합니다.

나) 주식 투자전략

① 공모주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공모주 등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공모 대상 기업에 대한 기업탐방, 외부 리서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기업가치 분석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성 및 내재가치가 우수한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통해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 우량 공모주라 판단 시 필요에 따라 배정물량의 증대를 위해 의무보유확약(Lock up)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모주 배정 이후에는 Buy & Hold 보다는 공모 Premium 획득을 목표로 투자하여 하락 위험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나 상당한 가격상승요인을 보유한 종목으로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 보유 후 매도하여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공모주가 아닌 일반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투자전략

· 이벤트 드리븐 전략

유상증자·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지수변경, 기업분할, IPO 등 기업 이벤트 이벤트 발생시 선별적 투자를 통한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Post-IPO 전략

기업의 성장성 및 내재가치 대비 주가의 괴리도 등을 종합하여 선별된 종목에 제한적으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 및 공모주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펀드로써 펀드의 특성상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가 없음에 따라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가)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에 투자함에 있어서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합니다. 또한 업종별, 기업별 내부 점검기준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며, 기준 미달 시 매도를 검토합니다.

나) 투자운용위원회, 투자전략회의 등 투자관련 회의를 통한 공동 의사결정과 다양한 투자판단 지표를 통하여 펀드매니저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이를 통해 상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 투자 시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매도금지로 인한 환금성 제약으로 유동성이 일부 제한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매도금지 규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무증권 투자에 있어 투자대상 채무증권의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경우 투자대상의 처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유 채무증권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 종목을 선제적으로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유동성 위험 및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지침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상대응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등 제반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90% 이하를 국내채권,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이자수익, 국내주식의 투자를 통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주가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편입상품으로 주가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기업의 실적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주식가격은 외부환경의 변동 등 시장전체위험의 증가 및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 개별위험의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공모청약은 물론 신규상장된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할 예정으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투자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거래에 따른 담보 제공 및 차입거래 수수료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입한 주식에 대해 대여기간 중 대여자의 환수요청이 발생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차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차입매도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 주식 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주요내용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공모주)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투자 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매도금지 규정에 따른 환금성 제약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 등의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 개별종목에 일반 공모펀드에서 적용하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게 기관경쟁률이 저조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물량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 높은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참여제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이 인수하는 증권에는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하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투자위험

구분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공모주를 투자함에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필요 시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금지에 해당하는 공모주 비중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도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금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부진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

	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4) 등급	보통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수익을 추구하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주식의 주가상승에 따른 시장대비 높은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이므로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보통위험인 4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 및 국내주식 투자에 따르는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위험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구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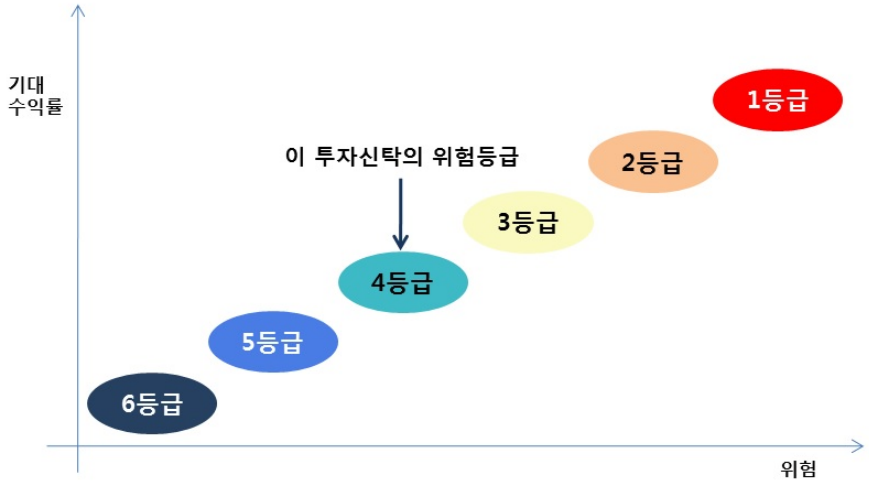

1)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투자대상자산의 종류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 용
1 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또는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4)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5)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주6) 편입비율, 최대손실가능비율 등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

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7)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와 투자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8) 모자형 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및 편입비율 등을 기초로 분류하되 설정 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9)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10)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1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12)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4)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 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차이 및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가입제한 없음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회사의 Wrap 보유자, 특정금전신탁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수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V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변액)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증권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함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S-P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자에 한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 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가입하는 수익자에 한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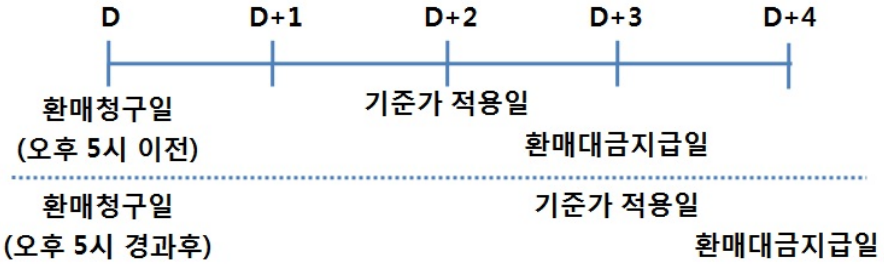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 분	지 급 비 율								지급시기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C-V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변액)	
환매 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 시
구분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S-P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지급시기

환매 수수료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 시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 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O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단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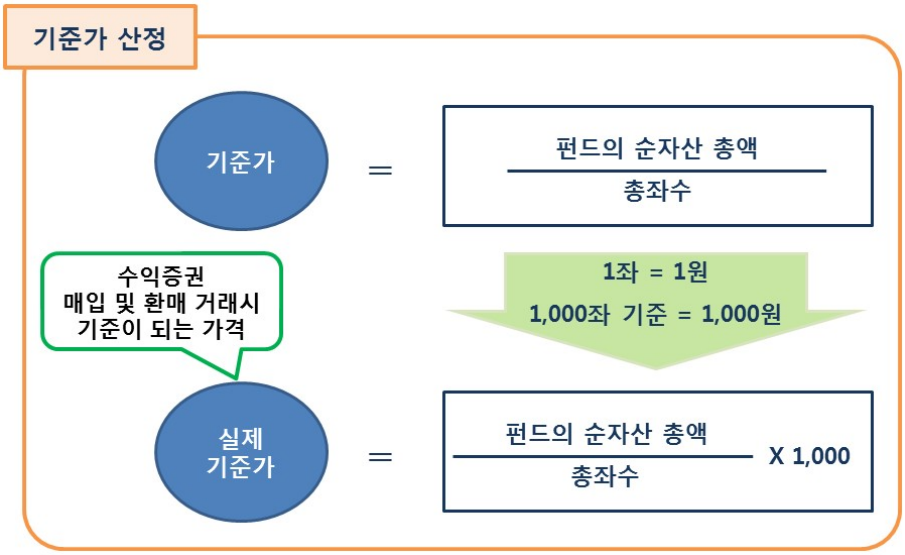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등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상장집합투자증권) 또는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비상장집합투자증권)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내 용
구성	투자재산평가담당 임원, 평가대상 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대상 투자재산 운용담당팀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한자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변경(평가오류 및 개선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 시기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온라인)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V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변액)	
판매 수수료	납입액의 0.8%이내	납입액의 0.4%이내		-	-	-	-	-	A・A-e・AG : 매입 시 S : 환매 시
환매 수수료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 시
구분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C-P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S-P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P1-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지급 시기
판매 수수료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	-	-	-	-		A・A-e・AG : 매입 시 S : 환매 시

		0.15% 이내							
환매 수수료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 시

주)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 시기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C-V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변액)	
집합투자업자보수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매 3 월 후 급
판매회사보수	0.40	0.20	0.22	0.70	0.00	0.35	0.02	0.01	
수탁회사보수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총보수	0.885	0.685	0.705	1.185	0.485	0.835	0.505	0.495	-
기타비용	-								발생시
총보수·비용	0.885	0.685	0.705	1.185	0.485	0.835	0.505	0.495	-
(동종유형 총보수)	0.74	0.58	-	1.14	-	0.71	-	-	-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 기구보수 포함)	0.885	0.685	0.705	1.185	0.485	0.835	0.505	0.495	-
증권거래비용	-								발생시
구 분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S (수수료후취 -온라인 슈퍼)**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S-P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지급 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45	0.45	0.45	0.45	0.45	0.45	0.45	0.45	매 3 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8	0.16	0.60	0.50	0.13	0.30	0.25	0.12	
수탁회사보수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총보수	0.865	0.645	1.085	0.985	0.615	0.785	0.735	0.605	-
기타비용	-								발생시
총보수·비용	0.865	0.645	1.085	0.985	0.615	0.785	0.735	0.605	-
(동종유형 총보수)	-	-	-	-	-	-	-	-	-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 기구보수 포함)	0.865	0.645	1.085	0.985	0.615	0.785	0.735	0.605	-
증권거래비용	-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해외거래예탁비용, 법률자문비용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2024년 1월 31일 기준)

주5) 종류 A형과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6)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이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

주7)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이 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중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 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1,000만원을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70	264	361	568	1,16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0	264	361	568	1,165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0	183	259	421	89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0	183	259	421	891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2	187	265	432	91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2	187	265	432	915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1	248	378	655	1,444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1	248	378	655	1,444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0	102	156	272	611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0	102	156	272	611
C-e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6	175	268	465	1,034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6	175	268	465	1,034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2	106	162	283	636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2	106	162	283	636
C-V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변액)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1	104	159	278	623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1	104	159	278	623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9	181	277	481	1,070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9	181	277	481	1,070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6	135	207	361	806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6	135	207	361	806
C-P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1	227	347	601	1,328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1	227	347	601	1,328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01	206	315	547	1,21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1	206	315	547	1,212
S-P1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3	129	197	344	770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3	129	197	344	770
P1-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0	164	252	438	97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0	164	252	438	975
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5	154	236	410	91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5	154	236	410	915
S-P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2	127	194	338	758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2	127	194	338	758

주1) 종류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8%, 종류A-e, 종류AG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4%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면 예상되는 총보수・비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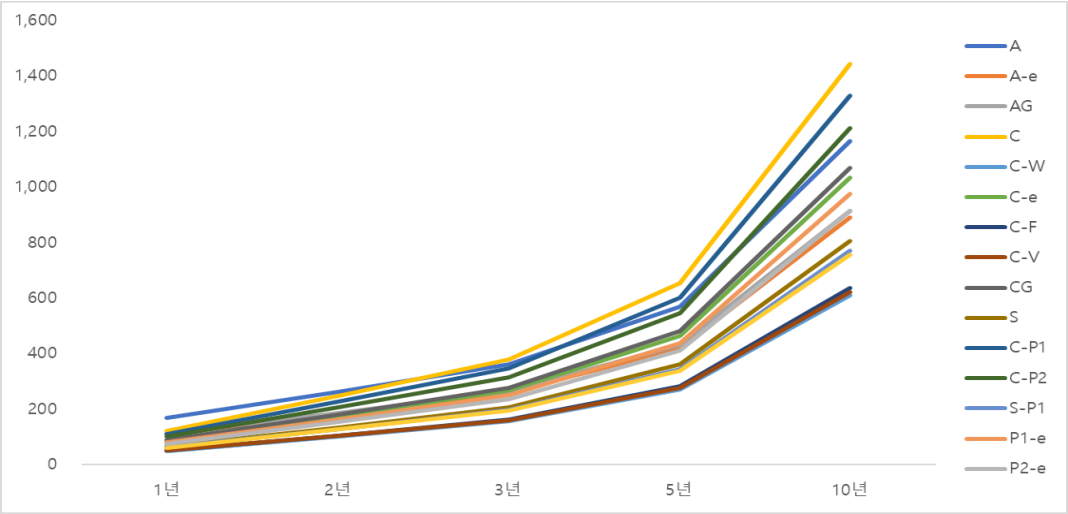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최초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

가)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3) 상환금 등의 지급

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나. 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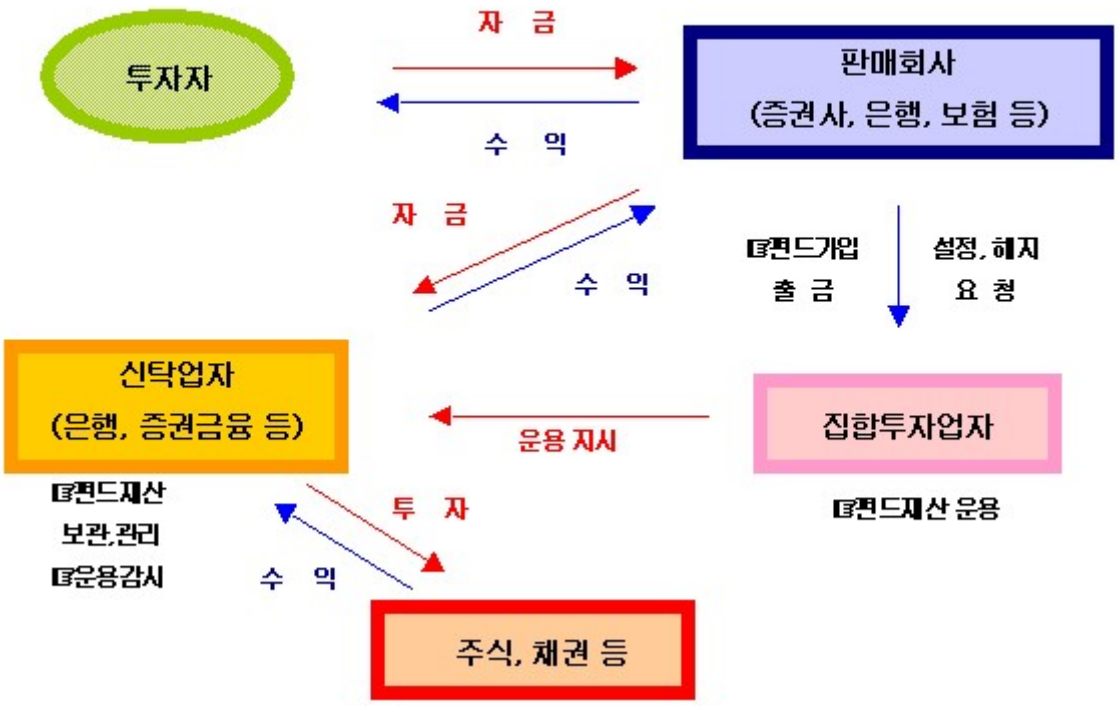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연락처 T. 02. 6276-7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dfund.co.kr)
회사연혁	2000. 7 회사설립 2000. 8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2007.12 자산운용업 인가 및 등록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8.10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백만원]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제24기 (23.12.31 현재)**	**제23기 (22.12.31 현재)**	**계정과목**	**제24기 (23.1.1~23.12.31)**	**제23기 (22.1.1~22.12.31)**
자산총계	70,843	83,026	영업수익	26,802	29,493
			영업비용	19,652	21,214
부채총계	7,523	15,679	영업이익	7,150	8,279
자본금	30,000	30,000	영업외수익	19	18
			영업외비용	1,542	733
자본총계	63,319	67,348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5,627	7,564
			당기순이익	4,350	5,742

라. 운용자산 규모

<2024년 4월 8일 현재, 단위 : 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부동산 파생	특별자산·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혼합자산 파생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471	25,868	457	832	5,225	27,117	36,970	9,398	26,307	132,64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연락처 T. 3770-8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sfc.co.kr)

회사연혁	1955. 10 회사 설립 2004. 6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업무 개시

2) 주요업무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나)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라)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마)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바)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사)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아)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

가)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연락처 T. 02. 2180-0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회사연혁	2000. 설립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KIS 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www.koreaap.com
나이스 P&I(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 길 11	www.nicepni.com
(주)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 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 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 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 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나)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다)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마)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바)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아)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자)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차)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카)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아래 기술된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 미지급 가능 사유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에 동의한 경우
보수 지급 기준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대상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다만, 변경시행일로부터 잔여 신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2. 대상금액 : 신탁계약서 제37조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1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비용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나)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

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법 상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다)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

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나)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다)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라) 법 제247조제5항 각호의 사항

마)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호의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⑨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hdfund.co.kr)・판매회사 및 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된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다)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마)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바)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차)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나)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분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운용본부장의 승인 하에 평가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지분증권의 평가

구분	투자전략자료	기업분석자료	기업탐방세미나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
배점기준	20%	30%	40%	10%

① 투자전략 자료 제공은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및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② 기업분석 자료 제공은 기업분석 자료의 적시성 및 충실도를 평가

③ 기업탐방 및 세미나는 기업탐방의 적절성과 세미나의 내용에 대한 평가

④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는 트리이더 담당팀에서 평가하며 증권사의 매매체결능력 및 업무협조 정도 등을 평가

⑤ 상기 평가항목 이외에 해당 운용 담당 부서 내부 합의 및 결재절차를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음

나) 채무증권의 평가

구분	매매체결능력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배점기준	40%	40%	10%	10%

① 매매체결능력은 매매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평가
② 정보제공 능력은 시황, 수급, 요청사항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
③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매 시 최우선 호가를 제시하는 거래사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다) 인덱스 펀드, 차익거래 펀드, 구조화 펀드에서의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과 차익거래의 경우

구분	매매체결능력	매매관련보고와 책임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및 일관성
배점기준	50%	20%	20%	10%

① 매매체결 능력은 매매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차익거래의 경우 수익성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평가
② 매매관련 보고와 책임은 매매 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와 매매실수나 사고 시 투자중개업자의 책임인정과 변상의 정도를 평가
③ 정보제공 능력은 시장 상황에 대한 사실적 내용과 수급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평가하며 평소 자료 제공의 정도를 평가
④ 신속성이나 정확성에 있어 편차가 없이 일관되는 정도를 평가

2) 보관 및 관리

가) 매 분기별로 상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내역과 전 분기 실행내역을 해당 운용 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해당 운용본부는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자의 선정에 있어 해당 해외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 투자를 통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운용실적 축적을 위함
투자승인일자	2024년 4월 11일
투자집행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기간 경과전 투자금회수 가능 요건	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해산하는 경우 ③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④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방법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 ③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주)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고유재산 추가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 투자를 통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운용실적 축적
투자승인일자	2025년 12월 31일
투자시기	2026년 5월 7일(자금납입)
투자금액	48억원
투자기간	추가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① 상기 투자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함. ② 이 경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해당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가" 및 "나" 이외의 고유재산 추가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
투자목적	고유재산 투자를 통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운용실적 축적
투자승인일자	2026년 6월 30일
투자시기	투자승인일 이후, 시장상황을 판단하여 납입일을 정하여 투자 예정 (이 경우, 추가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음)
투자금액	50억원 이내
투자기간	추가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① 상기 투자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함. ② 이 경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해당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의 정의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